

|        |              |
|--------|--------------|
| 의안번호   | 2208591      |
| 의 퇴 인  | 한지아 의원       |
| 회 답 일  | 2025. 6. 23. |
| 추 계 번호 | 25C1248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조 9,146억원(연평균 1조 3,829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4,683 | 13,950 | 14,801 | 16,656 | 19,056 | 69,146 | 13,829 |

주: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지원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8조<br>(군 복무기간에 대한<br>가입기간 추가 산입)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b>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b>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b>A값의 100%</b> 를 적용<br>※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br>※ (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최대 12개월 산입                    | 의무규정 |
| 2  | 안 제19조<br>(출산에 대한 가입기간<br>추가 산입)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b>출산한 때(출산한 자의 경우는 가입한 때)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무제한)</b>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br>※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자녀당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br>※ (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 첫째, 둘째자녀 각각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자녀당 18개월씩 산입(상한 없음) | 의무규정 |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3  | 안 제25조<br>(공단의 업무)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범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사업을 포함                                                                                                                                                                            | 의무규정 |
| 4  | 안 제100조의4<br>(지역가입자에 대한<br>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지역가입자 중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인 사람에 대해 <b>최대 36개월간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b> 할 수 있음<br>※(현행)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 중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에게 최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br>가입기간 추가 산입)  | ○        |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
| 2  |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br>기간 추가 산입)     | ×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3  | 안 제25조(공단의 업무)                    | ×        |                                                      |
| 4  |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br>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9조·제25조·제100조의4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19조)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이력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시점에 추가 가입이력을 산입해 주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중 자녀를 출산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추가

가입이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가입이력이 없는 자가 출산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안 제25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을 국민연금 공단이 수행할 경우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도의 설계 및 공단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여 운영하나,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입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에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 － 다만,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에 대한 인식개선 등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해 2025년 3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안 제100조의4)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와 이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정보, 대상자가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
  -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sup>1)</sup>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수를 알 수 없음
    - \* 참고로, 현행 지역가입자 연구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인면서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
  - － 또한,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 개인별 향후 소득 변동 예측에 필요한 자료가

1)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 중에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인 자(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대상으로 함

부채하여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36개월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8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만 추계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지원 시점 변경에 따라 지원  
방식도 전환(가입기간 산입 → 보험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에 연금액 계산 시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 참고로,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  
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원칙적으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  
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하여야 하나, 현행  
기준 적용 시 재정소요가 204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sup>2)</sup>되는 반면, 개  
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법 시행 연도인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제시
  - 현행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
  -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sup>3)</sup>을 활용하여 산출
-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안 제18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안 제  
18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에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2) 현행법은 2008년 이후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형의 가정상  
2008년 평균 입대 연령(21세)인 가입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한 시점(60세)에 도달하는  
2047년부터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다음의 변수를 반영하여 자체구축한 모형: (인구변수)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4년 9월 기준), (제도변수) 2023년 실적치까지의  
과거 실적 추세와 각각의 추정에 적합한 수리적 모형 등을 고행하여 산출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sup>4)</sup>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sup>5)</sup>,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7년에 병역의무를 마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 적용
- (군 입대 연령)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른 2024년 군복무크레딧 대상 병역의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입대자 비율) 2013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4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0.5만명<sup>6)</sup>)의 2024년 29세 남성 인구(37.2만명) 대비 비율(82.0%)을 산출하여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입대자 수에 2024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5만명) 비율(6.7%)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2~2024년 입대자들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 연 도  | 육군 등 <sup>1)</sup> | 해군 등 <sup>2)</sup>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평균 복무기간 <sup>3)</sup> |
|------|--------------------|--------------------|----|--------|-----------------------|
| 2024 | 18                 | 20                 | 21 | 21     | 18.7                  |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5) 징집병을 의미함(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6) 병무청 제출자료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100%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적용

○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의 규정을 적용

[표 3]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7~2031년

(단위: 천원, %)

| 구 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 국민연금 A값(A)       | 3,383 | 3,516 | 3,654 | 3,799 | 3,949 |
| 보험료율(B)          | 10.0  | 10.5  | 11.0  | 11.5  | 12.0  |
| 월 보험료 지원 단가(A×B) | 338   | 369   | 401   | 436   | 47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7개월 지원 기간 중 6.7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 입대 연도 |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 지원시점               |                    |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2027  | 206,771       | 206,771<br>(6.7개월) | 206,771<br>(12개월)  |                    |                    |                    |                   |
| 2028  | 191,505       |                    | 191,505<br>(6.7개월) | 191,505<br>(12개월)  |                    |                    |                   |
| 2029  | 186,917       |                    |                    | 186,917<br>(6.7개월) | 186,917<br>(12개월)  |                    |                   |
| 2030  | 193,743       |                    |                    |                    | 193,743<br>(6.7개월) | 193,743<br>(12개월)  |                   |
| 2031  | 204,354       |                    |                    |                    |                    | 204,354<br>(6.7개월) | 204,354<br>(12개월) |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조 9,146억원(연평균

1조 3,829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군복무크레딧 지원<br>(안 제18조) | 4,683 | 13,950 | 14,801 | 16,656 | 19,056 | 69,146 | 13,82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군복무크레딧에 대하여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함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김우림 | 이진우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김우림 | 02-6788-3738 | wrkim@assembly.go.kr |